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이효진 의원

나. 의안번호: 제3671호

다. 발의일자: 2026년 5월 26일

라. 회부일자: 2026년 5월 27일

2. 제 안 이 유

-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임산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임산부에 대한 입장료(이용료) 감면 근거 마련 - 시설 입장료(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를 추가하여, 임산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7호 신설).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법제과 의뢰 시 일괄개정조례안으로 검토의견 받았으나, 기획경제 위원회로부터 각각의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 받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시립 시설의 입장료 감면 대상에 임신부를 포함하여 임신부의 시설 이용 편의를 보장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확산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¹⁾을 통해 임신, 출산, 양육 등 전 생애과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 강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²⁾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의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지난 2024년 5월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³⁾한 바 있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임산부 모바일 앱카드’ 제작('24년 8월)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신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행정 기반을 마련해 온 것으로 파악됨.

<임산부 자격확인서비스(서울시 여성가족실)>

자격정보	보유기관	입력정보	출력정보
임산부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등록번호	성명, 임산부여부, 다태아여부, 분만예정일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임신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5.20.], [2024.5.20., 제정]

- 동 조례에서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요금의 감면)⁴⁾에 규정되어 있는데 면제 대상은 공원녹지 관계 법령(「자연공원법」)과 복지(「장애인복지법」) 및 보훈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외 대상은 관련 서울시 조례⁵⁾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본 조례안은 서울시가 이미 다른 조례⁶⁾ 개정을 통해 입장료 및 관람료 면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산부 지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제20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6세 미만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3. 공익 또는 학술목적으로 공원 내에서 조사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
6.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소지한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4.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다만, 서울 대공원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가족 지원카드 소지자 또는 지원카드에 등재된 가족을 포함한다.)

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입장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5.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면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무료 관람)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람료 징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서울특별시 서울갤러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무료이용)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또한, 지난 2023년 다자녀가족에 대한 도시공원 입장료 면제 규정을 마련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⁷⁾에 이어,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연속적이며 실효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다만,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세입 감소에 따라 당해 연도 예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미 성립된 예산을 전제로 세입이 편성된 상황에서 감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세입예산과 실제 징수 전망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재정수지 악화, 세출 자원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예산 원칙과 재정 운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추경을 통한 세입 경정, 자원 보전 방안 마련 및 시행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7)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윤영희 의원 외 51명), 의안번호(제767호).
[시행 2023.7.18.] [서울특별시조례 제8781호, 2023.7.18.] 일부개정

[붙임] 임산부 대상 입장료 등 감면 조례 개정안 발의 목록

○ 임산부 대상 입장료 등 감면 관련 조례 개정안(이효진 의원 발의) 발의 현황

연번	조례명 및 개정 조항	시설유형 및 감면사항	소관실국 (부서)
1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물재생센터 체육시설 및 주차시설 등 사용료 감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이용료)	한강공원 이용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이용료 감면	미래한강본부 (기획예산과)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주차요금 감면	교통실 (주차계획과)
4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교육이용)	여성발전센터 교육과정 신청 우선권 부여 및 비용 지원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5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장료의 감면)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면제	여성가족실 (아이돌봄담당관)
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서울대공원 입장료 면제	정원도시국 (정원도시정책과)
7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이용료)	도시건축전시관 전시, 공연, 행사 이용료 면제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8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사용료의 감면)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 등) 사용료 감면	행정국 (대외협력과)